

의안번호	2220853
의 퇴 인	이주희의원
회 답 일	2026. 9. 4.
추 계 번호	26B4451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 및 미디어교육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8,200만원(연평균 3,6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안 제8조)	75	—	—	—	—	75	15
미디어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안 제10조)	50	—	—	—	—	50	10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11조·제12조)	6	13	13	13	13	57	11
합계	131	13	13	13	13	182	36

주: 1.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경우,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에는 제정안 시행일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운영하여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종합계획·평가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실제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국가는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 시행기관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과 미디어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8조(미디어교육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미디어교육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미디어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1조(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항)	의무규정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3항) 1. 국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사람 8명 2.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사람 8명 3. 미디어 관련 단체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4. 그 밖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제5항)	
7	안 제15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디어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라 미디어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항)	
8	안 제16조(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국민에게 다양한 미디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교육의 지원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18조(미디어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소관 미디어교육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미디어교육시설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11	안 제19조(미디어 이용자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디어 이용자의 참여 확대 및 권익 보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2	안 제20조(차별 없는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 서비스로서 미디어를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와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3	안 제21조(취약계층 미디어 서비스 제공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미디어 활용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의 실시 등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22조(권한의 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 미디어 이용자 보호, 취약계층 미디어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	안 제19조(미디어 이용자 보호 시책의 마련)		
3	안 제20조(차별 없는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4	안 제21조(취약계층 미디어 서비스 제공 강화)		
5	안 제8조(미디어교육지원 종합 계획의 수립 등)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6	안 제9조(미디어교육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미대상 － 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연도별 미디어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에 따르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시행기관 자체 인력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7	안 제10조(미디어교육의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8	안 제11조(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추계 － 다만,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수,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제외함
9	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10	안 제15조(의견 청취)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수렴 절차 및 방식, 실비 지급 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6조(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고, 연구·개발기관 등을 지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내용 및 규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2	안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미디어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r> <th>사업명</th> <th>사업개요</th> <th>'26</th> </tr> <tr> <td>시청자 미디어 재단 지원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td> <td>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센터 상시교육, 소외계층 지역 미디어교육, 유아·청소년 미디어교육 등 -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미디어강사 양성 및 연수, 미디어교육 연구 등 </td> <td>1,183</td> </tr> </table>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업명	사업개요	'26	시청자 미디어 재단 지원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센터 상시교육, 소외계층 지역 미디어교육, 유아·청소년 미디어교육 등 -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미디어강사 양성 및 연수, 미디어교육 연구 등
사업명	사업개요	'26						
시청자 미디어 재단 지원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센터 상시교육, 소외계층 지역 미디어교육, 유아·청소년 미디어교육 등 -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미디어강사 양성 및 연수, 미디어교육 연구 등	1,183						
13	안 제18조(미디어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 미디어교육 시설을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디어교육시설의 수 및 시설·장비의 규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4	안 제22조(권한의 위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정안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탁기관의 인력 및 경비 등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다만,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는 제정안 시행일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에는 하반기(연 1회 개최)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른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비용은 특정분야 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표 2] 특정분야 교육 관련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연구용역명	사업연도	예산
교육부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 기초연구	2023	70
기후에너지환경부	「제4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	2024	80
평 균			75

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용 참조

-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 1차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500만원(연평균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75	-	-	-	-	75	15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미디어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안 제10조)

- 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지침(이하 “미디어교육 평가지침”)’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미디어교육 평가지침 수립 비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평가 체계·제도 관련 정책연구 용역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함

[표 4] 평가 체계·제도 관련 정책연구 사례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연구용역명	사업연도	연구비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환경변화 대응 및 평가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송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24	60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 및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2023	40
	방송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21	50
평 균			50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 평가지침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000만원(연평균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미디어교육 평가지침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미디어교육 평가지침 마련	50	—	—	—	—	50	1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평가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1조·제12조)

- (위원회 구성) 제정안에 따른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1명, 공무원 위원 4명, 위촉 위원 2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 1명(위원 중 선임)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국회 상임위원회(교육위, 과방위, 문체위, 성평등가족위)가 추천하는 사람 8명, 교육부장관·과기부장관·문체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8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미디어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 중 민간위원은 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1명 및 위촉 위원 20명으로 총 21명으로 가정함

[표 6] 미디어교육위원회의 구성(안)

구 분	위원 수	위원 신분 및 구성
민간위원 (위원장 및 위촉위원)	21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위원장) - 국회 상임위원회(교육위, 과방위, 문체위, 성평등가족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8명 - 교육부장관·과기부장관·문체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8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미디어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명
공무원 위원	4명	- 관련 부처(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성평등가족부)의 공무원

자료: 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 개최 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에는 하반기(6개월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여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¹⁾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400만원(연평균 1,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21	21	21	21	21	—	—
회의개최 횟수(B, 회)	1	2	2	2	2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
합 계(D=A×B×C, 백만원)	6	13	13	13	13	57	11

주: 1.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은 제정안 시행일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6개월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여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종합계획·평가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실제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 현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

□ (사업 개요)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통해 국민이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여 올바르게 이해·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26)
시청자미디어 재단 지원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청자미디어센터 상설 미디어교육 － 소외계층·지역 미디어교육 －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 유아 미디어교육 － 청소년 미디어교육	1,109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 미디어강사 양성 및 연수 － 미디어교육 연구 － 미디어교육 간행물	74
합 계				1,183